

전기용품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제7군에 속하는 전기소독기(전기건조기)를 안전 인증을 받았는데, 제품의 크기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는데 파생모델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나머지 부품은 상기인증제품모델과 동일 사양입니다.

- 정 격 : 220V 60Hz 250W → 220V 60Hz 260W
- 크 기 : 570 X 370 X 585(mm) → 675 X 400 X 935(mm)
- 안정기 : 220V, 15W, 2등용 → 220V, 20W, 2등용

Answer

문의하신 제품(인증 받은 전기소독기)의 소비전력이 250W에서 260W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비전력이 기 인증 받은 제품의 소비전력과 동일한 세부적용 안전기준 범위(200W ~ 300W) 안에 있으므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 및 회로 등의 변경이 없으면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품 및 회로 검토 등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인증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휴즈 홀더의 안전인증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품에 휴즈홀더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휴즈 홀더가 안전인증 대상품목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용하시고자 하는 휴즈 홀더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현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3조(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 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즈홀더는 “정격전류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통형인 것”에 한하여 안전인증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